

## ‘도서관 지적자유’의 연원과 기본권적 기반(중)

정 현 태\*

목차 : (상)

### 1. 머리말

- 1.1 문제배경
- 1.2 개념정의

### 2. 도서관 지적자유역의 역사적 연원

- 2.1 공공도서관의 역할변화
- 2.2 도서관 지적자유역의 선언과 전개
- 2.3 도서관 지적자유역의 수호활동  
(이상 1·2월호 게재)

(중)

### 3. 도서관 지적자유역의 기본권적 기반

- 3.1 검열문제와 표현의 자유
- 3.2 알권리와 정보공개제도

### 3.3 정보접근권

### 3.4 인터넷과 통신의 자유

(이하 5·6월호 게재)

(하)

### 4. 사례를 통해 본 도서관 지적자유

- 4.1 자료선정 정책에 대한 이의제기
- 4.2 제공도서의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 4.3 도서관의 중립성과 사서의 자기검열
- 4.4 도서관 규칙과 노숙자의 도서관 이용권리
- 4.5 도서관 이용기록과 이용자 비밀보호
- 4.6 도서관 시설제공의 원칙

### 5. 맺음말

## 3. 도서관 지적자유역의 기본권적 기반

### 3.1 검열문제와 표현의 자유

도서관의 지적자유역은 사실상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리의 개념이 아니다. 다만 지적자유역의 토대를 이루는 검열에 대한 반대와 표현의 자유옹호라는 기본 철학이,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기본권적 제반권리 즉 ‘언론출판의 자유’

와 ‘집회결사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그리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22조), ‘통신비밀의 자유’ (제18조), ‘종교의 자유’ (제20조) 등에 비추어, 헌법의 기본권 조항과 부합한다는 점에서 사법적 당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적 권리개념으로서 주장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지적자유역의 개념은 원래 미국에서 유래하고 발전하여 도서관 활동의 기본 철학으로까지 개발되었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에서 일

\*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huntj@dreamx.net)

체의 검열적 규제를 부정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국가 통치철학의 가장 중요한 이념으로 강조하는 등 지적자유에 대한 법률상 토대가 명시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적자유는 매우 미국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적자유를 이루는 표현의 자유 수호라는 이념은, 세계인권선언의 입장을 계승하여 유엔이 1966년 채택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19조(표현의 자유) 제2항에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그 권리에는...(중략)... 모든 종류의 정보와 생각을 구하고 받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하여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선언하고 있다. 즉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간의 기본권으로 선언되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하거나 판례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분단상황이라는 특수 환경과 유교적 통치전통 등에서 비롯한 권위적 분위기는 국가의 통치행위에 대한 저항과 이의제기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보다는 국가의 안보를 우선하는 사법적 전통을 판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민주화 투쟁의 성과로서, 최근의 각종 사법적 판례를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는 분야로부터 표현의 자유 개념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부분적인 지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도서관의 지적자유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사상과 정보유통의 광장으로서의 도서관 기능을 뒷받침하는 개념이다. 이는 사상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대한 각종의 개입과 규제를 입법으로 지원하였던 과거의 검열행위에 대한 저항행위에서 출발한 도서관 이념으로서, 왜 도서관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가를

역설적으로 설명하여 주는 배경적 철학을 제공해 주고 있다.

도서관의 지적자유에서 검열 행위는 이용자의 자료에 대한 접근 권리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설정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 내외에서의 검열행위에 대한 저항은 곧 사상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민주적 활동으로 간주된다. 일부 사서들이 자료선정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주장하며 검열을 선호하는 사례를 부인할 수 없으나, 도서관계의 대다수의 입장은 역시 검열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독자들에게 자료를 추천하고 자문하는 과정에서 사서개인의 가치관에 충실한 검열자적 역할로부터, 독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하고 건실한 장서를 구축하는 선정자로서 사서의 역할이 변화되어 왔다는 것이 검열과 사서의 태도에 대한 일반적 이해이다 (Robbins 1998, 92-94).

검열에 대한 사서의 반대의견을 가장 오래 전에 밝힌 바 있는 베렐슨(B. Berelson)은 사서는 도서선정에 대한 사회적 및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검열에 굳건히 반대해야만 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 (Berelson 1938), 영국도서관협회가 1978년 윌리엄즈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대부분의 협회 회원들이 음란물과 영화에 대한 엄격한 검열에 대하여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조사사실을 밝히고 있다 (Usherwood 1989, 93-103). 미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권리 선언에서도 도서관은 정보를 제공하고 계몽을 행하는 도서관의 책임을 달성하기 위하여, 검열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도서관은 자유로운 표현과 자유로운 사상접근에 대한 제약에 저항하는 모든 개인 및 집단과 협력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ALA, OIF 1996, 3-17).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신성의 영역이 될 수 없다. 표현의 자유를 이상적으로 구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면하는 공동체 내부의 합의와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적지 않은 저항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는 국가 및 사회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공동체의 윤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근래에 그 권익이 강조되는 사생활권을 침해할 경우로 대별된다.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적 규제의 양상은 미국과 일본의 전례를 살펴보다라도, 국가 및 사회안전이라는 정치체제 논의에 대한 검열적 규제에서 어느 정도 체제적 우월의식이 반영되고, 사회 및 국민의식에서 안정을 확보한 이후로는 사회윤리에 대한 검열적 규제로 그 비중이 넘어간다는 것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1993, 126).

도서관에서 검열의 윤리문제에 대한 일반적 입장은 독서행위가 이용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견해에서 생겨난다. 검열자의 입장에서는 유해하고 반사회적인 내용의 책은 독자에게 유해한 영향을 준다는 전제아래 검열을 통해 해로운 영향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근거로 하고 있다.

셰라(Shera, J.H.)는 다음과 같이 인간에게 미치는 독서의 영향력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면서 사서의 기본적 입장이 검열관의 편에 서게 되는 점에 동의를 표한 바 있다 (셰라 1986, 36).

“... 독서나 커뮤니케이션은 개인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검열관 이외는 그 누구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 물론 검열관은 독서가 해가 될 수 있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고, 그 외의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책을 읽는 일은 어느 누구에게도 결코 해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들은 주장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모든 전문직은 독서행위가 유익하고, 독서에서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바탕을 두고 있다. 이제 우리들은 언제까지나 이 쌍방의 입장을 모두 취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유익하다고 하면서, 나쁜 책을 읽는 것은 어째서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나는 전연 이해할 수 없다. 어떤 의미로는 나는 어느 정도 검열관 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책을 읽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악서를 읽는 경우는 실사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를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에게 어떤 미묘한 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악서를 읽는 것은 한 인간의 취미, 우수(優秀)에 대한 기준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그것은 바로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독서의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어느 정도인가가 아니라 독서의 영향력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도서관학이 전제하고 있는 전통적 입장이라는 점이다. 다만 이러한 영향력을 인정하는 가운데, 과연 유해한 것과 무해한 것 또는 반사회적인 것 등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의 문제로 집약된다. 결국 검열과 관련하여 관건이 되는 것은 검열의 기준에 대해 어떻게 사회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합의가 결여된 일방적인 검열과 제재가 문제가 되는 것이며, 도서관이 관여하는 검열의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도서관에서의 검열은 어느 일방에 의해서 사회의 민주성과 형평성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괴하려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상의 시장'에 대한 훼손의 문제로 간주된다. 즉, 정보와 사상

의 적절한 유통경로로서의 도서관의 기능이 합의되지 않은 가치기준을 이유로 권력적 소수나 물리적 다수에 의해 훼손될 때에 도서관의 역할이 비난받게 된다. 따라서 검열에 대한 도서관의 입장은, 검열에 대한 조건없는 반대를 명분으로, 일체의 무정부적 사상의 방임을 조장하는 것이라기보다,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운영에 대한 나름의 원리를 관철하고자 하는 도서관 자체의 기반철학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2 알권리와 정보공개제도

민주적인 근대 시민사회의 원리는, 사회에 참여한 모든 시민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정보를 주는 자유와 받는 자유 모두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각종 매체의 발전으로 정보의 생산이 폭증하고 있는 정보사회에서는 정보를 입수하는 자유의 확보가 보다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를 받을 자유 즉 '알자유'의 개념은, 공권력에 집중된 독점정보량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요구하는 '알권리' 개념으로 발전하였고, 국정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도화한 '정보공개제도'와 언론매체활동과 관련한 '정보 접근권', 그리고 시민교육과 관련한 '독서의 자유' 등으로 확대되었다. 정보접근 및 이용에 대한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알권리는, 독일의 경우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되거나, 핀란드의 '문서공개법'(1951), 덴마크의 '정보공개법'(1964), 미국의 '정보자유법'(1967), 영국의 '정보보호법'(1984), 독일의 '연방정보보호법'(1986) 등과 같은 입법을 통해 보편적인 시민권리로 제도화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난 1998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국민의 알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행정, 사법, 입법부 등의 정부기관에서 구체적인 시행령과 세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개인 사생활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대부분의 정보공개에 소극적이다. 또한 실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거부에 대한 불복구제수단으로서의 '정보공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고, 이를 행정심판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동 법률은 선언적으로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제7조 제1항의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행정비밀주의를 조장하는 예외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적인 정보공개 의의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공개란 국가와 국민간에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상 보장된 알권리를 사법적 구제의 대상이 되는 청구권적, 실질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정보공개제도는 행정의 비밀주의에 대한 견제를 통해 행정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정치 및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안창남 1999, 12). 즉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누구나 청구에 응해서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존의 종이문서 중심의 소극적 정보공개 환경으로부터 전자적 정보생산과 공개에 대한 강제적 의무를 규정한 적극적 '전자정보공개법'으로 발전되어, 전자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입법화하기에 이르렀다

(안창남 1999, 22-23).

이러한 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해서 기대되는 도서관의 역할은 이들 행정자료를 포함한 일체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정보접근의 경로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정부의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제15823호, 1998.7.1개정)에서는 제82조(행정간행물의 제출)의 제3항에서 "행정기관은... 행정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발간일 부터 10일 이내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지역대표관에 그 간행물 2부를 제공하여야 하며, 행정간행물을 제공받은 지역대표관은 이를 일반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4항을 통해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간행물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표관의 공공도서관을 행정간행물 제공대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659호 97.11.11개정)의 제105조(도서관과의 협력)에서 "중앙자료관리기관 및 시·도의 자료과는 국립중앙도서관 및 관할지역안의 지역대표관과 자료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보공개의 경로로서의 도서관의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기관으로서 도서관은 이용자 모두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물론, 도서관 정보자료 수집과 제공과정에서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만일 도서관이 자기규제에 의해 자료수집과 제공의 역할을 소홀히 한 때에는 시민의 알권리와 도서관 이용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엄남이 1992). 미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 권리 선언문에서 도서관의 개념을 '정보와 사상의 광

장'으로서 표현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사회에서 도서관의 역할은 정보공개제도의 전달경로로서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최선의 목적으로 설정되었다.

### 3.3 정보접근권

접근권과 관련하여 기대되는 도서관의 역할은 정보공개제도에서와 같이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경로로서 제공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자료에 대한 이용자 접근권을 강조한 지적자유개념은 모든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도서관 활동에서 보장하고 있다는 면에서 선언적이며 동시에 구체적이다.

정보접근권은 국민의 알권리 및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정부기관의 국정행위에 대한 언론인들의 취재를 위한 자유로운 접근권을 주장한 것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오늘날 정보접근권의 개념은 국민 누구나가 국정정보에 대한 공개나 접근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기본권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개념이 바로 알권리이다. 알권리를 정보를 받아야 할 권리와 정보를 요구할 권리로 구분한다면, 접근권은 바로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정보사회의 특징적 현상의 하나는 정부기관의 정보독점이 심화되고, 정보를 전달받는 쪽의 수동적 입장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의 상호교류상 건전한 균형을 위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측의 사회적 공공성이 강조되고, 전달받는 측의 알권리로서 정보 접근권이 요구된다. 국가기밀을 이유로 과도하게 제약하는 국정정보에 대한 통제는 결국 국민의 참정권을 해치고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미국의 '정보자유법'이나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정보접근권 즉 알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다.

도서관의 지적자유와 관련하여 정보접근권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시도한 중요한 문건으로, 1986년 미국의회 '정보접근의 자유와 형평성에 관한 위원회'의 결과보고서인 일명 '라시 보고서'(Lacy Report)가 있다. 동 보고서는 미국 국민의 정보에 대한 자유롭고도 평등한 접근권에 대한 기본적 지침을 검토하면서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권고를 하고 있다. 즉 보고서는 인쇄매체 환경에서와 같이, 전자정보의 보급시스템에서도 공중의 전자정보에 대한 접근경로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중요하게 확인하고, 이에 따라 전자정보의 보급시설로서 도서관 시설의 정보화 투자, 사서에 대한 기술교육, 이용자 정보화교육 등에 과감히 투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정부의 국정정보에 대한 공공적 접근경로로서 기존의 전국적 도서관 기반체제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라시 보고서는, 특별 위원회의 부서별 토의를 거친 미국도서관협회의 검토 결과, 부분적인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미국도서관협회의 기본정책들과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보고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미국도서관협회 내 지적자유위원회와 지적자유사무국의 실무자들이 접근권의 문제를 지적자유문제의 부분집합으로 주장한 반면, 라시 보고서를 검토한 특별위원회는 지적자유 문제는 접근권 문제의 한 부분집합에 불과하다고 간주하고 검열의 개념까지도 접근제한(restricted access)의 개념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이다. 결국 접근권의 문제와 지적자유 문제는 논의의 핵

심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해 준 견해차이었다.

접근권은 표현권과 함께 도서관의 지적자유에 요구되는 두가지 근본 조건으로서 과거 표현권에 대한 주장이 도서관 자료선정과 관련한 검열에 대한 수동적 입장의 저항이었다면, 현재의 접근권에 대한 주장은 도서관 자료 이용과 관련한 각종의 규제적인 제한 철폐에 대한 적극적 입장의 노력으로 간주된다. 도서관의 지적자유가 초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데서 출발해서 근년에 들어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철폐를 주장하는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발전하면서, 수집단계의 제약에 대한 저항에서 제공단계에서의 적극적 정보봉사를 우선하는 것으로 지적자유 의 강조점이 변화되어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3.4 인터넷과 통신의 자유

통신 네트워크상 특히 도서관이 참여하는 인터넷상의 통신검열과 관련하여 가장 부각되는 논쟁점은 각종 여과(혹은 차단)프로그램(filtering software)의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다. 특히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상업용으로 보급되고 있는 여과프로그램들은 한편으로 건전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보이용을 제약하는 검열적 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난받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입법이 추진되다가 의회에서 부결되었던 정보품위법(Information Decency Act)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인터넷 통신업체에 대한 음란물 여과프로그램 설치는 모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음란물 차단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한편으로 국민의 정당한 정보접근권에 대한 침해와 권력적 개입에 의한 통신상의 검열이라는 역기능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정보이용에 대한 윤리적 지침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 도서관 정보봉사의 진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인쇄매체를 통한 역할에서 견지되었던 도서관의 지적자유에 대한 입장이 인터넷과 같은 전자통신 환경에서도 유효한 지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었다. 결국 미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에서의 인터넷이용에 대한 입장 특히 여과(filtering)와 관련한 확고한 반대입장을 정책문으로 천명하고 이를 통해 통신네트워크상의 지적자유에 대한 도서관의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1996년에 발표된 '전자정보, 봉사,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이라는 도서관 권리선언의 해설문과 1997년 채택된 '인터넷 여과에 대한 성명'을 통해서, 미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 현장에서의 전자정보에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한 각종의 규제적인 움직임에 반대하고 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여과프로그램의 사용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였다.

또한 동 협회는 전자정보에 대한 접근경로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재차 강조한 라시 보고서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통신네트워크상의 도서관은 과거 인쇄매체 위주의 전통적 도서관 역할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통신네트워크의 활용으로 대두되는 새로운 규제적 이용제한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도서관이 견지하여야 할 지적 자유의 원리가 반검열적 입장임을 명확히 확인하고 있다.

## 참고 문헌

- 세라, 제이 에이치. 1986. 도서관학의 사회학적 기반. 윤영譯. 서울: 구미무역(주) 출판부.
- 안창남. 1999. "정보공개제도의 의의와 정보공개운동". 정보공개청구운동 백서 1998.5 - 1999.5. 서울: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11-27.
- 엄남이. 1992. 정보공개제도실시에 따른 공공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원 문헌정보학과.
- 鹽見昇. 1991. 知的自由の圖書館. 東京: 青木書店.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1993. 외국의 간행물윤리제도. 서울:동위원회.
- ALA Office for Intellectual Freedom. 1996. *Intellectual Freedom Manual. 5th ed.* Chicago
- Berelson, B. 1938. "The Myth of Library Impartiality". *Willson Library Bulletin*, 13(2) : 87-90.
- Robbins, L.S. 1998. "Censorship and the American Library: American Library Association's Response to Threats to Intellectual Freedom 1939-1969". *Library Quarterly*, 68(1) : 92-94.
- Usherwood, Bob. 1989. *The Public Library as Public Knowledge*. London: the Library Association.

- (다음호에 계속) -